

[별지 제15호의4 서식] 자동화평가 결과 안내(제40조의5제2항 관련)

자동화평가 결과 안내서(제40조의5제2항 관련)

귀하가 xxxxx년 oo월 △△일 당사를 대상으로 자동화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에 따라 귀하에 대한 당사의 자동화평가 결과, 자동화평가의 기준 및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개요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 또한,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정정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수정된 정보를 활용하여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하여 줄 것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1. 자동화평가 결과

- 평가 기준 시점 : 20◇◇년 △월 ○일(금융거래시점 시점)
- 평가 대상 : (금융상품명 기재)
- 당사의 자동화평가 결과 \_\_\_\_\_

2. 당사의 자동화평가 주요 기준 및 기초정보의 개요

① 식별정보(반영비중 \_\_\_\_\_%)

| 구 분     | 내 용 | 입수 경로 |
|---------|-----|-------|
| 성 명     |     |       |
| 주민등록번호  |     |       |
| 직 업     |     |       |
| (이하 생략) |     |       |

② 거래내용판단정보(반영비중 \_\_\_\_\_%)

· 대출정보

| 기관명 | 개설일 | 만기일 | 금액 | 입수 경로 |
|-----|-----|-----|----|-------|
|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|       |

· 신용카드 개설 정보

| 기관명 | 개설일 | 만기일 | 입수 경로 |
|-----|-----|-----|-------|
|     |     |     |       |
|     |     |     |       |

③ 신용도판단정보(반영비중 \_\_\_\_\_%)

· 채무불이행정보

| 발생기관 | 발생일 | 해제일 | 등록금액 | 연체금액 | 입수 경로 |
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

· 단기연체정보

| 발생기관 | 발생일 | 연체일 | 연체금액 | 입수 경로 |
|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|
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 |
|      |     |     |      |       |

· 금융질서문란정보

| 발생기관 | 발생일 | 사유 | 입수 경로 |
|------|-----|----|-------|
|      |     |    |       |

|  |  |  |  |
|--|--|--|--|
|  |  |  |  |
|  |  |  |  |

④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(반영비중 \_\_\_\_\_%)

| 종류      | 금액 | 기준일 | 입수 경로 |
|---------|----|-----|-------|
| 소득정보    |    |     |       |
| 기타 자산   |    |     |       |
| (이하 생략) |    |     |       |

⑤ 기타 정보(반영비중 \_\_\_\_\_%)

· 공공정보

| 발생기관 | 발생일 | 등록금액 | 등록사유 | 입수 경로 |
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
|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
|  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 |

※ 작성 요령

- (1) 상기 양식은 예시로서 금융회사에서 신용정보 구분별(식별정보, 거래내용판단정보, 신용도판단정보, 신용거래능력판단정보, 기타정보) 해당 정보가 있는 경우 모든 정보에 대해 세부 항목 및 입수 경로를 안내(다만, 신용정보의 구분, 세부 정보 및 세부 공개항목은 협회 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)
- (2) 입수 경로는 당사 자체입수,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개인신용평가회사,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(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회사 중 개인신용평가 업무를 하는 회사, NICE평가정보 또는 코리아크레딧뷰로(KCB) 등 회사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재)중 해당되는 경로를 안내
- (3) 상기 양식이 금융거래계약의 성격을 고려할 때 자동화평가 결과의 안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회 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음.

2.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

(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안내하고 없으면 본란 삭제)

해당 금융회사가 작성  
(통신요금 납부실적,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실적 등)